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김 윤 덕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3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이유가 없어진 경우 개발구역의 해제 등의 규정을 신설(법률 제10조제2·3항)하는 내용으로 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1121호, '25.12.2. 공포)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조항 개정

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2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4.21. ~ 6.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2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의 고시) 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 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해 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<u>제2항</u>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 1. ~ 4. (생 략)	제13조(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의 고시) ----- ----- ----- <u>제4항</u> - ----- ----- ----.
	1. ~ 4.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939